

보 건 복 지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관리 소홀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창원시, 진주시, 사천시, 김해시, 밀양시, 창녕군, 남해군, 하동군,
산청군, 함양군, 거창군, 합천군

내 용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, 제7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「장애인복지사업안내」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장애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재판정 기한일 3개월 전에 재판정 안내문을 통보하고

지정된 기한 내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장애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촉구하고,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문을 발송하고 2주간의 의견청취 후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게 되어 있다.

그런데 창원 등 12개 시·군에서는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112명이 재판정 기한을 평균 380일이 경과하도록 재판정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장애인 등록 취소 등의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 창원시장, 진주시장, 사천시장, 김해시장, 밀양시장, 창녕군수, 남해군수, 하동군수, 산청군수, 함양군수, 거창군수, 합천군수는

장애등급 재판정 미이행 장애인에 대하여 재판정 이행 독려, 장애등록 취소 등

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
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